

#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28-3,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 공급대상: A-2블록 신혼희망단운(공공분양) 546세대 중 1세대 (전용면적 59㎡ 1세대)

나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 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모집은 <mark>전라북도 거주자를</mark>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 및 부적격당첨,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1세대 1주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회망타운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시 계약금(이천만원), 입주 시 잔금(약 9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납부 없음)
- 건축공정상 공<mark>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기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u>잔여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u>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mark>

#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완주삼봉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으며, 총 820세대 중 27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546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되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1.29.) 및 추가모집공고(2020.03.20., 2020.08.26., 2020.09.18., 2022.05.20., 2022.09.29, 2023.01.17.)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1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15(수)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은 계약 및 입주기간을 감안하여 계약금(이천만원), 입주시 잔금(약 90%) 2회에 걸쳐 입주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정상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의 추기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금회 공급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1.29)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명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LH를 병기한 **LH-비엘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주택건설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 및 제2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거주 중인 무주택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10호에 따라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향후에도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지 않고(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전매 등으로 분양권을 구매한 LH 완주삼봉 신혼회망타운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공고일(2023.11.15) 기준 완주삼봉A-2블록 기계약자·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 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b>혼인기간</b> 이 <b>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b>	무주택세대구성원(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2023.11.15)부터 <b>1년 이내 혼인사실</b> 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서에 환매특약 등이 추가되며, 혼인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기 시 환매등기가 설정될 예정입니다.
  공고일로부터 1년(2024년 11월 14일)까지 혼인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됩니다.
- ※ 환매특약 설정 시 은행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은행에 환매 특약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지사항 공지 및 개별안내)

공 고	청약신청 접수	당첨자(예비자) 발표	동호개방(열람)	서류 제출 및 당첨자 계약 (현장계약)	
'23.11.15(수)	'23.11.29(수)∼'23.11.30(목) 09:00∼ 18:00 야간(24시간)에도 청약 가능함.	'23.12.04(월) 16:00 이후	'23.11.23(목)~'23.11.24(금) (10:00~16:00)	'23.12.08(금) (10:00~17: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	일앱 <b>※현장접수 불가</b>	엘에이치비엘로스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LH전북지사 보상판매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9층)	

-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입주청소는 주택 잔금 완납 이후 가능합니다**. (임시 키불출은 불가)

# Ⅰ │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1. 공급규모

■ 완주삼봉지구 A-2블록 820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최고 14~25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세대

# 2. 공급대상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금희모집		ol T	
	동호 주택형	주택 형	타입	이 발코니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대지				입주 지정
		178		유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면적 면적 (계) (㎡)			예비자	기간
ľ	202동 601호	059.0600C	59C	확장	59.06	23.5437	6.1145	43.1384	131.8566	43.8623	1	5	계약일로부터 60일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습니다.(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 × 0.3025 또는 m'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 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부여한 23.12.08~24.02.07 입니다.

## 3. 공급금액 및 대금납부조건

■ 주택분양가격(중도금 없음,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가격 포함)

[단위 : 천원]

주택형	주택타입		분양가격	계약금	잔금	
구력성 구력다입		주택가격	확장비	합계		계곡급
059.0600C	59C	174,660	10,654	185,314	20,000	165,314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지구로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안내

동호	주택형	공간옵션	추가 선택품목옵션
202동 601호	59C	기본형(거실/침실2/침실3 분리)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선반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외기실 내부로 선반 이동)
- 59C타입은 타워형세탁기 설치위치 후면에 보일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일체형 세탁기와 가스계량기의 간섭방지를 위하여 가스계량기 배관이설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위 사항을 포함하여 가전제품 설치로 인한 모든 문제는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 가스보일러 AS를 위해 보일러 전단에 설치된 일체형 세탁기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반비를 LH에서 지급합니다.)

- ※ 운반비 지원기간 : 보일러 AS 책임기간(입주지정기간 말일 다음날로부터 3년, 25년 8월 28일까지)
- 추가선택품목 안내 : 건축공정상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 금회 공급하는 세대 내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비용은 계약자가 계약 당일 별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 : 3,000,000원 \* 계약 시 계좌번호 안내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문제 및 A/S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동호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니 계약 전 참고 바랍니다. (엘에이치비엘로스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 Ⅱ │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11.15)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5)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 후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도 6세 이하(만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됨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 2016년 11월 15일 이후 출생자 (11월 15일 포함)

#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4년 11월 14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청약 시 신청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신청서상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 기재된 등본제출) 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될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

####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 하시고 세대워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첫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하 세대워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5.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5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전북지사 보상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Ш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안내 등

##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우편 및 팩스 전수 불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 체결
2023.12.04(월) 16:00	2023.12.08(금) 10:00~17: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apply.lh.or.kr)	장소 : LH전북지사 보상판매부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9층)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분양 정보 → 공지 사항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며, 해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미계약으로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나서전북지사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전북지사 9층 보상판매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158, 연락처 063-230-6342)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3.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기한(2023.12.08)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 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 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